



• 모든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학부모 고민을 통해 알아보는 ‘신종 사이버폭력’

* 본 사례와 상황은 가상의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고민해결 상담사 '어울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보호자)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해서 공유하는 일들이 찾아지고 있어요. 혹시나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몇 번 주의를 주었는데,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폭력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네, 학부모(보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호에 딥페이크(Deepfake)의 개념, 신종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실었습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이번 7월호 소식지도 꼼꼼하게 읽어봐주세요. '어울림'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가짜, 속임수(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부위를 다른 사진이나 영상물에 합성하여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편집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리곤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사진이나 영상 제작 등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마치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 또는 음란한 영상과 같은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의 2021년 5월 3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수사 결과, 피의자 중 **87.2%(82명)가 10대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진짜 같은 가짜 사진(또는 영상)을 만드는 일이 장난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알아보까요?

불법 합성물(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 악용 등]	사이버 갈취 [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등]	불법촬영물 [드론 몰카 등]				
<p>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 (사진, 영상, 음성 등)</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 5px;">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항</td> <td style="border: none; padding: 5px;">형법 제311조(모욕)</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 5px;">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td> <td style="border: none; padding: 5px;">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td> </tr> </tab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p>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디(ID)나 아이템 등 사이버 상의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의 괴롭힘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형법 제350조(공갈)</p> <p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p>	<p>촬영 대상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 제2항</p> <p style="text-align: center;">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 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모든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아이)와 대화 실천하기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아이)가 사이버상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학부모(보호자)가 관심을 갖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와 대화를 실천해보세요.

- 1 자녀(아이)를 살펴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주세요.
- 2 자녀(아이)의 사이버상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3 자녀(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사이버상의 활동에 대해 확인해보고,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4 사이버상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부모(보호자)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정보

	[아인세 미니다큐] 아이들,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알쓸학팁] 1. 사이버폭력(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보 '아인세' 세상 https://www.ainse.kr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개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제1회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을 2021년 6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총 21팀, 326명의 지도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알리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의 멋진 활동을 기대해주시고, 학부모(보호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대국민 포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대국민 포럼을 2021년 8월 1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전사회적 지원방안]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폭력 신고 기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 국번없이 117 상담문자 #0117 http://www.safe182.go.kr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제보(ECRM) https://ecrm.cyber.go.kr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https://www.kcc.go.kr 국민참여>고객안내>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안내	

학부모(보호자) 참여 코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7/15(목)~7/30(금))

